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패스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8. 2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39조 제2항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39조 제6항, 제10-14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거래 내역 등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 한패스㈜는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.

한패스㈜는 검사대상기간(2021.5.1.~2024.5.14.) 중 보고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, 거래 취소 건에 대한 변경 미보고 등 오류 보고(총 934,756건, 약 1억달러)를 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 한패스㈜는 한국은행 외화전산망 보고에 관한 독립적인 부서의 검증절차 등*을 마련하여 외환전산망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* ①보고前 보고자료·전산자료 상호검증, ②보고後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한 재점검, ③전산시스템 주기적 점검을 통한 보고 오류 사유 파악 등 시스템 보완, ④지급결제 취소거래 발생시 한국은행 앞 기보고한 내용의 변경보고 절차 등을 마련